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임만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하면 구청장이 “도시·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·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특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” 반드시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심의기구를 도시재생위원회로 정하고 있는바,
-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율하고 있는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

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

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